

# 도로연장 설명자료

## ※ Web 이용시 유의사항

### ▶ 통계검색

- 구축년도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년도를 구축하였으며 시/군/구(경기도 : 시/군, 서울시 : 구)별로 검색가능
- 2011년, 2012년 자료중 서울시 도로연장은 집계방식이 도로등급이 아닌 호선별 집계방식으로 변경되어 서울시 도로연장은 합계만 업데이트하였음.
- 엑셀저장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에 대해 엑셀파일로 저장됨.

### ▶ 원시자료

- 행정코드는 통계청의 행정구역분류 코드임.

## I. 요약

### 1. 개요

DB명	DB구분	DB분류	참조DB
도로연장	조사자료	- 대분류 : 교통시설 - 중분류 : 도로 및 철도	- 존DB

### 2. DB구축내용

#### ▶ 자료수집

-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자료 중 행정구역 별 도로현황(경기도, 서울시) 자료를 수집함.

#### ▶ DB내용

- 경기도, 서울시에 대해서 1998년~2017년의 도로등급별 도로연장, 포장률의 항목을 시/군/구 단위로 구축함.

#### ▶ 구축범위

- 경기도, 서울시

#### ▶ DB구축형태

년도	행정코드	도로등급	연장(m)	포장연장(m)	포장률(%)
1998	3101000	1	11,080	11,080	100.0
1998	3101000	2	32,138	32,138	100.0
⋮	⋮	⋮	⋮	⋮	⋮
2015	3138000	2	88,200	88,200	100.0
⋮	⋮	⋮	⋮	⋮	⋮

\* DB 항목설명 바로가기

▶ **DB사용시 유의사항**

- 연장은 미포장 및 미개통된 도로까지 포함하며 미개통 도시계획도로는 포함하지 않음.
- 민자고속국도의 연장은 고속국도 연장에 포함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연장은 국도에 포함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연장은 지방도의 연장에 포함됨.
- 서울시의 특별시도 연장은 시군도로 집계하였음.
- 1999년 서울시의 시군도 연장은 간선도로가 제외된 수치이며 이 수치는 일반국도에 포함되었음.
- 2006년은 도시계획도로 제외수치임.
- 2011년, 2012년 자료중 서울시 도로연장은 집계방식이 도로등급이 아닌 호선별 집계방식으로 변경되어 서울시 도로연장은 합계만 업데이트하였음.

▶ **갱신기간 및 시점**

- 갱신기간 : 1년
- 갱신시점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공표 후 약 1개월 후

**3. 원자료 내용**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원자료 내용**

- 원자료는 각 시/군/구의 도로연장을 집계한 자료이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도로현황조사』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 II. DB구축내용

### 1. 자료수집 및 DB구축방법

#### ▶ 자료수집방법

- 도로연장은 경기도, 서울시 각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도로의 연장을 집계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취합하여 매년 『도로현황조서』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
- 경기도 교통DB센터에서는 이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였음.

#### ▶ DB구축방법

- 『도로현황조서』를 통해 공표된 자료를 도로등급별 도로연장, 포장률 항목으로 구분하여 DB로 구축함.

### 2. DB내용

#### ▶ DB내용

- 1998년~2017년의 연장, 포장연장, 포장률 항목을 시/군/구 단위로 구축함.

행정구역	도로등급	1998			...	2017		
		연장(m)	포장연장(m)	포장률(%)	...	연장(m)	포장연장(m)	포장률(%)
수원시	고속국도	11,080	11,080	100.0	...	11,080	11,080	100.0
수원시	일반국도	32,138	32,138	100.0	...	32,138	32,138	100.0
수원시	지방도	7,500	2,000	26.67	...	7,320	7,320	100.0
⋮	⋮	⋮	⋮	⋮	...	⋮	⋮	⋮
양평군	고속국도	0	0	0.0	...	0	0	0.0
양평군	일반국도	88,200	88,200	100.0	...	84,800	84,800	100.0
⋮	⋮	⋮	⋮	⋮	...	⋮	⋮	⋮

#### ▶ DB항목설명

구분	내용
년도	구축년도('98년 ~ '17년)
행정구역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기준
도로등급	고속국도 및 도로법상의 분류체계를 따른 4개 분류(도로등급코드 참조)
연장	행정구역별 도로등급별 연장(단위:m)
포장연장	행정구역별 도로등급별 포장연장(단위:m)
포장률	행정구역별 도로등급별 포장률(단위:%)

\* DB 구축형태 바로가기

### 3. DB코드정의

#### ▶ 도로등급코드

정의 코드	도로등급	
	코드내역	비고
1	고속국도	민자고속국도 포함
2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포함
3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4	시군도	특별시도 포함
5	합계	

## 4. 구축범위

### ▶ 구축범위

- 경기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군/구(경기도 : 시/군, 서울시 : 구) 단위로 구축함.

### ▶ 구축기간

- 1998년~2017년(20개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음.

### ▶ 갱신기간 및 시점

- 원자료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음.
- 집계된 자료는 『도로현황조서』를 통해 공표하고, DB갱신은 자료가 공표된 후 1개월 후 갱신함.

## 5. DB 사용시 유의사항

- 연장은 미포장 및 미개통된 도로까지 포함하며 미개통 도시계획도로는 포함하지 않음.
- 민자고속국도의 연장은 고속국도 연장에 포함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연장은 국도에 포함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연장은 지방도의 연장에 포함됨.
- 서울시의 특별시도 연장은 시군도로 집계하였음.
- 1999년 서울시의 시군도 연장은 간선도로가 제외된 수치이며 이 수치는 일반국도에 포함되었음.
- 2006년은 도시계획도로 제외수치임.
- 2011년, 2012년 자료중 서울시 도로연장은 집계방식이 도로등급이 아닌 호선별 집계방식으로 변경되어 서울시 도로연장은 합계만 업데이트하였음.

## 6.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도로 및 보수 현황시스템 (<http://www.rsis.kr/>)
- 참고문헌 : 도로현황조서(발행기관 : 국토교통부)

### III. 원자료 내용

#### 1. 원자료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2. 원자료 내용

- 경기도, 서울시의 각 시/군/구의 도로연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갱신되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취합하여 『도로현황조사』를 통해 공표한 자료임.
- 원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2017년도 경기도(단위 : m)					
행정구역명	도로등급	전체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
경기도	고속국도	747,354	747,354		
	일반국도	1,613,395	1,589,495		23,900
	지방도	2,780,594	2,363,783	36,230	380,581
	특별·광역시도	1,440	1,440		
	시도	7,557,163	6,866,983	164,158	526,022
	군도	508,554	370,104	77,550	60,900
수원시	고속국도	18,890	18,890		
	일반국도	32,138	32,138		
	지방도	22,372	22,372		
	시도	874,948	874,948		
∴	∴	∴	∴	∴	∴

#### 3. 도로등급에 따른 법률상의 정의(출처 : 고속국도법, 도로법)

- 고속국도 : 고속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 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일반국도 : 일반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지방도 :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가.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나.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 다.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 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시도 :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군도 : 군도는 군(郡)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가.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 다. 위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